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공사장에서 직접 자동차(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한 지정수량 미만도 직접 주유행위 허용
- 나.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의 반복승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별표2 제7호의규정과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

#### 4.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신설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사장에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1회 즉 90일을 반복 승인하도록 함으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에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똑 같이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